

# 고소작업대(시저형) 설치·사용 가이드

※ 과상승방지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소작업대 사용 시 보호구(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철저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 과상승방지장치 설치·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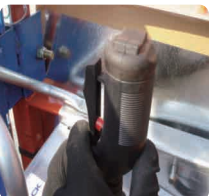
☞ 과상승방지장치는 안전바 또는 리미트스위치 방식 중 1개를 선택하여 설치

구분	안전바 방식	리미트스위치 방식
설치 높이	<p>▶ 안전난간 상부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바 상부까지는 20cm 이상</li> <li>- 안전바 하부까지는 15cm 이상</li> </ul>  	<p>▶ 안전난간 상부에서 60cm 이상</p>  
설치 개수	<p>▶ 협착방지대 전면(4면) 설치</p> 	<p>▶ 지지봉 4개소 설치</p> 



## 제어장치 연동구조 설치 및 사용

☞ 제어장치는 우발적인 동작이 방지되도록 연동구조로 설치하고 사용, 임의 해제 금지



제어기는 불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연동형 그립이나 스위치를 작동하여  
동작을 제어하고, 비상정지스위치  
동작시 전원 차단



불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풋스위치를 동작하여 신호가 입력  
되었을 경우 고소작업대 동작이 가능

# 고소작업대(시저형) 안전작업 점검표



점검자 : \_\_\_\_\_

점검일자 : 20 . . .

번호	점검내용	YES	NO
1	▶ 안전인증을 받은 고소작업대인지 여부(법 제84조) (안전인증 대상) '09.7.1. 이전 제품은 비적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 과상승방지장치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원활하게 동작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 제어장치는 우발적인 동작이 방지되는 연동구조로 설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 풋스위치는 미끄럼방지 표면 구조이고 제어 연동 해제 사용 금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지급 및 착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6	▶ 비상정지장치 작동 시 원활하게 동작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7	▶ 작업대의 안전난간은 견고하게 설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8	▶ 정격하중 초과 시 과부하방지장치는 정상 동작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9	▶ 작업대의 작동을 알리는 경보장치 정상 동작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	▶ 유압계통 이상 시 작업대 떨어짐 방지를 위한 낙하방지밸브 설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